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어떠한 **금품, 사례**  
또는 **향응도**  
**받지 않습니다**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전 임직원은  
「청탁금지법」\*에 따라 직무와 관련하여  
어떠한 명목으로든 금품 등 수수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 적발 시 법에 의거하여 제공자 역시  
형사처벌 및 과태료 등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인사·계약등 청탁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불법 인·허가,  
면허처리」 등 14가지 유형의  
부정청탁을 하면 안됩니다.  
(법 제5조제1항)



직무관련대가수수



누구든지 공직자 등에게 또는  
그 공직자 등의 배우자에게  
수수금지 금품 등을 제공  
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안됩니다.  
(법 제8조제5항)



사고·의례예의규정



「청탁금지법」에서는 직무관련성이 있을 경우,  
어떤 형태의 금품수수도 금지됩니다. 다만  
원활한 직무수행, 사고·의례, 부조 차원에서  
우리사회가 허용할 만한 최소한의 가액 기준을  
정한 것입니다.

음식물  
(식사, 다과, 주류,  
음료 등)  
**3만원**

선물  
(음식 이외의 물품  
또는 유가증권 등)  
**5만원**

경조사비  
(축의금, 조의금,  
화환 등)  
**10만원**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임직원의 금품수수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목격하신 경우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kihf.or.kr



clean@kihf.or.kr  
02-3479-7600 (내선 7번)

